

JOINT NOTIFICATION, OF 4 APRIL 2022
ADDRESSED TO THE REGISTRY OF THE COURT

The Hague, 4 April 2022

On behalf of the Republic of Agrillion and the State of Restroia, in accordance with Article 40, paragraph 1, of th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we have the honor to transmit to the Registry an original of the *Compromis* for submission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of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States concerning the flight of a drone over the Hellenon strait, signed in The Hague, The Netherlands, on the fourth day of April in the year two thousand and twenty-two.

Johannes Mercer
Ambassador of the Republic of Agrillion
to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

Klaus Isidore
Ambassador of the State of Restroia
to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

COMPROMIS

SUBMITTED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BY THE REPUBLIC OF AGRILLION AND THE STATE OF RESTROIA
ON THE DIFFERENCES BETWEEN THEM CONCERNING THE FLIGHT OF A DRONE
OVER THE HELLENON STRAIT

The Republic of Agrillion and the State of Restroia (hereinafter referred to as “Agrillion” and “Restroia” respectively and “the Parties” collectively),

Considering that differences have arisen between them concerning the legality of the flight of a drone over the Hellenon strait, and other matters;

Recognizing that the Parties have been unable to settle these differences by means of negotiation;
and

Desiring further to define the issues to be submitted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urt”) to resolve this dispute;

In furtherance thereof the Parties have concluded this *Compromis*:

Article 1

The Parties submit the questions contained in this *Compromis* including the Annex thereto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ase”) to the Court pursuant to Article 40, paragraph 1, of the Statute of the Court.

Article 2

The Parties agree that the submission of the Case to the Court is without prejudice to any question of the burden of proof.

Article 3

The rules and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applicable to the dispute, on the basis of which the Court is requested to decide the Case, are those referred to in Article 38, paragraph 1, of the Statute of the Court.

Article 4

1. All questions of rules and procedures shall be regula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Official Rules of the 2022 KSIL International Law Moot Court Competition.
2. The Parties request the Court to order that the written pleadings should consist of Memorials

presented by each of the Parties not later than the date set forth in the Official Schedule of the 2022 KSIL International Law Moot Court Competition.

Article 5

1. The Parties shall accept any judgment of the Court as final and binding upon them and shall execute it in its entirety and in good faith.
2. Immediately after the transmission of any judgment, the Parties shall enter into negotiations on the modalities for its execution.

In witness t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have signed the present *Compromis* and have affixed thereto their respective seals of office.

Done in The Hague, The Netherlands, this fourth day of April in the year two thousand and twenty-two, in triplicate in the English (*Compromis*) and Korean (Annex) Language.

Johannes Mercer
Ambassador of the Republic of Agrillion
to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

Klaus Isidore
Ambassador of the State of Restroia
to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

ANNEX

다툼 없는 사실

1. 아그릴리온 공화국(Republic of Agrillion, 이하 ‘아그릴리온’)과 레스트로이아 국(State of Restroia, 이하 ‘레스트로이아’)은 아틀란티스 대륙의 남서부에 있는 이웃 국가들이다. 레스트로이아는 이 대륙 서쪽 끝에 있고, 그 바로 동쪽에 아그릴리온이 있으며, 아그릴리온의 북쪽과 동쪽에는 디카이오네스 산맥이 있는데, 이 산맥을 경계로 그 북쪽에는 크레도니아, 동쪽에는 아브데란이 인접해 있다. 아그릴리온과 레스트로이아의 국경선을 이루는 스테릭스 강(Steryx R.)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흘러 세렌데스 해(Sea of Serendes)에 이른다. 반폐쇄해인 세렌데스 해의 북쪽에는 레스트로이아 본토와 아그릴리온이 있고, 남쪽에는 레스트로이아 영토인 칸데라 섬(Candera Is.)이 있으며, 서쪽에는 칸데라 섬과 레스트로이아 본토 사이의 헬레논 해협(Hellenon Strait)이 있다. 헬레논 해협은 길이 22km, 평균 폭 20km인 레스트로이아의 영해이며, 오래전부터 다수 국가의 주요 해상 교통로로 이용되었으나, 이 해협의 통항에 관한 별도의 조약이 체결된 적은 없다. 양국의 영해법상 영해의 기선은 통상기선이고 영해의 폭은 12해리이며, 양국 모두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했으나 그 경계는 아직 미확정 상태이다(<Sketch Map> 참조).
2. 헬레논 해협에서 약 350km 서쪽에는 실바니아 공화국(Sylvanian Republic, 이하 ‘실바니아’) 영토인 브리네라 섬(Brineria Is.)이 있다. 브리네라 섬은 실바니아 본토에서 약 80km 동쪽에 있고 면적은 약 360km²이다. 브리네라 섬은 자연 상태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무인도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이 섬은 다양한 종의 식물이 자라는 곳이어서, 계절에 따라 꽃, 눈 등이 해안의 바위 절벽과 어울리는 수려한 경관으로도 유명하다. 실바니아는 브리네라 섬을 자연 상태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 1998년부터 사람의 접근과 물품의 반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 섬에 들어가려는 자 또는 이 섬에 물품을 반입하려는 자는 같은 해에 개정된 실바니아의 ‘자연환경 보호와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주 전에 실바니아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아그릴리온의 남부 지역에서는 2020년 초 대량의 꿀벌이 사라지는 ‘봉군(蜂群) 붕괴 증후군(Colony Collapse Disorder, CCD)’이 발생했고, 이 사태가 언론에 보도되자 당국뿐만 아니라 관련 연구기관들과 환경운동 단체들도 이 현상에 주목했다. 이 사태가 보도된 직후 아그릴리온의 한 연구기관은 벌과 같은 곤충 없이는 수분(受粉)이 이루어질 수 없는 식물 종이 여럿이어서 CCD가 인류의 식량 생산에 악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CCD는 이미 세계 곳곳에서 간헐적으로 발생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 원인으로는 휴대전화 등의 기기에서 방출되는 전자파, 신종 바이러스, 살충제에 함유된 네오니코티노이드(neonicotinoid), 기후변화 등이 거론되었으나 정확한 원인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었다. 레스트로이아와 실바니아는 2018년부터 법령으로 네오니코티노이드 성분을 함유한 살충제 사용을 금지하고 있었고, 아그릴리온은 네오니코티노이드를 함유한 살충제의 생산을 자제하도록 국내 살충제 제조사들에 권고하기는 했으나 이를 법령으로 금지한 적은 없다.
4. 실바니아에 본부가 있는 국제적인 생태·환경운동 단체인 EcoPax의 아그릴리온 지부는

아그릴리온 법에 따라 아그릴리온에서 설립된 법인으로, 2020년 아그릴리온 남부에서 발생한 CCD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일련의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EcoPax 아그릴리온 지부는 그러한 사업의 하나로, CCD가 발생한 적이 없는 브리네라 섬에서 자라는 식물들의 개화(開花), 벌의 활동과 수분(受粉), 그리고 이 식물들의 결실(結實) 상태를 조사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EcoPax에 따르면, 이 작업은 이 섬과 같은 위도(緯度)에 있는 아그릴리온 남부 지역의 개화, 수분, 결실 상태와 비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EcoPax 아그릴리온 지부의 엘레나 박사(Dr. Elena)는 이 작업이 완료되면 기후변화가 CCD를 초래한 원인의 하나인지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년 5월 20일 EcoPax 아그릴리온 지부는 매년 수시로 아그릴리온의 서부 해안에서 출발하여 브리네라 섬에서 자라는 식물들의 개화와 벌의 활동을 통한 수분 등의 상태를 촬영한 다음 다시 아그릴리온 서부 해안으로 돌아올 고고도 장기 채공(High Altitude Long Endurance, HALE) 드론의 제작과 운용을 EnorD 사(社)에 의뢰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EnorD 사는 레스트로이아 법에 따라 레스트로이아에서 설립된 법인이며, 드론 전문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EnorD 사의 대표는 레스트로이아 국민인 데카드 씨(Mr. Deckard)로, 2018년에 EnorD 사 대표로 취임한 이래 1년 중 30여 일의 해외 출장 기간을 제외하고는 줄곧 레스트로이아에 거주하고 있다.

5. EcoPax 아그릴리온 지부는 2020년 12월 1일 이 단체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EnorD 사로부터 이 드론을 사들여 BeeToSurvive 호로 명명하여 이 단체 소유의 아그릴리온 항공기로 등록했고 또 아그릴리온 당국의 인가 등 이 드론의 비행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2021년 2월 21일 오전 10시(현지 시각)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엘레나 박사는 브리네라 섬의 개화와 벌의 활동 상태를 관찰하기 위해 BeeToSurvive 호로 명명한 이 드론을 이날 오전에 출발시킬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또 BeeToSurvive 호를 브리네라 섬 상공에 진입시켜 개화 상태와 벌의 활동 상태를 촬영하기 위한 실바니아 환경부 장관의 허가는 이미 얻었으며, BeeToSurvive 호의 비행을 위한 무선 신호의 송수신에 필요한 아그릴리온과 실바니아 양국의 국내 절차를 모두 마쳤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그에 따르면 BeeToSurvive 호는 아그릴리온 서부 해안에서 출발하여 아그릴리온 영공을 벗어나기 전에 고도 20km로 상승하여 헬레논 해협 상공을 통과한 다음 브리네라 섬을 향하여 비행할 예정이었다. 예정대로 출발한 BeeToSurvive 호는 아그릴리온 영공에서 고도 20km로 상승하여 브리네라 섬을 향하여 비행하던 중 헬레논 해협 상공에 진입한 지 1분 만에 예정된 항로를 이탈했고, 출발 때부터 BeeToSurvive 호가 아그릴리온 서부 해안의 기지로 송신하던 무선 신호도 항로 이탈 직후에 끊겼다.
6. 레스트로이아 국방부 대변인은 2021년 2월 21일 정오(현지 시각), “칸데라 섬 서쪽 레스트로이아 영해와 인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훈련 중이던 레스트로이아 해군이 오전 11시경(현지 시각) 그 훈련 상황을 촬영하던 드론 한 대를 강제 착륙시키기 위해 재밍(jamming)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해당 드론의 고도가 낮아지던 중 갑자기 불어온 역풍으로 인해 드론 기체가 파괴”되었다고 발표했다. 그는 이 훈련에 동원되는 부대의 규모와 정확한 훈련장소만 특정되지 않았을 뿐 2020년 2월 12일 국방부 대변인 성명서로 이 훈련을 이미 예고했다는 점과 함께 무인항공기나 무인비행장치의 레스트로이아 영공 비행을 허가해 달라는 아그릴리온 당국의 어떤 요청도 받은 바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해당

드론의 추락 지점인 영해에서 레스트로이아 해군이 동체 앞부분과 오른쪽 날개만 남은 드론 잔해를 건졌고 나머지는 수색 중이며, 건져 올린 오른쪽 날개 밑면에는 'BeeToS' 여섯 글자가 써어 있고 글자 'S'의 바로 위에 손상된 렌즈 하나가 남아 있다고 밝혔다.

7. 레스트로이아 국방부 대변인의 발표가 나온 다음 날인 2021년 2월 22일, 아그릴리온에 체류 중이던 테커드 씨와 엘레나 박사는 한 아그릴리온 언론사의 인터뷰에서 레스트로이아 당국이 공개한 정보를 근거로 레스트로이아 당국이 건져 올린 것은 BeeToSurvive 호의 잔해로 보인다고 말했다. 엘레나 박사와 테커드 씨는 또 레스트로이아 당국이 동의한다면 그 잔해가 BeeToSurvive 호의 것인지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엘레나 박사와 테커드 씨는 브리네라 섬의 개화와 벌의 활동 상태를 촬영하는 것이 이번 BeeToSurvive 호 비행의 유일한 목적이었으며, 레스트로이아의 군사훈련은 촬영한 바 없다고 말했다.
8. 이튿날인 2021년 2월 23일, 레스트로이아 국방부 대변인은 자국 해군이 건져 올린 잔해가 BeeToSurvive 호의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EcoPax 아그릴리온 지부와 EnorD 사 관계자의 참여를 요청했고, EcoPax 아그릴리온 지부와 EnorD 사가 즉각 이에 응했다. 다음날인 2월 24일 레스트로이아 국방부 대변인은 해당 잔해가 BeeToSurvive 호의 것임이 판명되었다고 발표했다. EcoPax 아그릴리온 지부와 EnorD 사는 BeeToSurvive 호 비행 방해와 파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레스트로이아 정부에 요구했으나, 레스트로이아 정부는 “자국 영공을 무단 침범한 외국 민간 드론이 자국 군사훈련을 불법 촬영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해당 드론을 강제로 착륙시키거나 파괴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들의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자 EcoPax 아그릴리온 지부와 EnorD 사는 2021년 4월 5일 각각 그 대리인을 통하여 BeeToSurvive 호의 비행 방해와 파괴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 판결을 구하는 소(訴)를 레스트로이아 법원에 제기했으며, 이 사건 특별협정(Compromis)의 통지일 현재 제1심 소송절차가 진행 중이다.
9. 헬레네 해협 상공에서 추락한 드론이 BeeToSurvive 호인 것으로 밝혀지자 2021년 3월 7일, 아그릴리온 정부는 국제법상 허용된 항로를 따라 비행하던 BeeToSurvive 호의 비행을 방해하고 이를 파괴함으로써 레스트로이아가 자국에 대한 국제의무를 위반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에서 아그릴리온 정부는 또 레스트로이아가 그 국제의무 위반에 대하여 자국에 배상해야 하며 재발 방지책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10. 이튿날인 2021년 3월 8일, 레스트로이아 정부는 BeeToSurvive 호가 자국의 군사훈련을 불법 촬영할 것임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으면서도 BeeToSurvive 호의 레스트로이아 영공 무단 침범을 허용한 아그릴리온이야말로 레스트로이아에 대한 국제의무를 위반했다는 반박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에서 레스트로이아 정부는 아그릴리온이야말로 그 국제의무 위반에 대하여 자국에 배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레스트로이아 정부는 아그릴리온의 이러한 국제의무 위반이 있었던 이상 BeeToSurvive 호의 영공침범과 불법 촬영을 막기 위해 자국 해군이 취한 조치는 국제법상 전적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11. 2021년 4월 19일, 아그릴리온과 레스트로이아는 이 사건에 관한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외교교섭을 시작했으나, 양국 대표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6개월에 걸친 교섭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2021년 10월 20일, 아그릴리온 대표는 만약 이번 교섭이 실패하면 자국은 양국 중 어느 쪽도 1982년 ‘해양법에 관한 유엔협약’(이하 ‘유엔해양법협약’이라 함) 제287조에 따른 선언을 한 적이 없음을 고려하여 이 협약 제7부속서에 따른 중재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레스트로이아는 만약 아그릴리온이 그 절차를 개시하면 자국은 1944년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라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에 제소하겠다고 맞섰다. 이렇게 분쟁을 해결할 방법에도 합의하지 못하자, 아그릴리온은 6개월 이내에 이 사건 분쟁을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이하 ‘ICJ’)에 회부하자고 제안하면서 만약 레스트로이아가 이 제안을 수락하지도 않고 또 배상 요구를 받아들이지도 않는다면 2022년 5월 1일부터 부정기적으로 운항하는 레스트로이아 민간항공기의 자국 영공 비행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12. 레스트로이아는 부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자국 민간항공기의 아그릴리온 영공 비행을 금지하는 것은 국제민간항공협약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반발했으나, 만약 다음 2가지 제안에 동의한다면 아그릴리온의 특별협정 제안을 수락하겠다고 밝혔다. 즉 아그릴리온의 이 영공 비행 금지 계획이 레스트로이아에 대한 국제의무 위반인지에 대해서도 ICJ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그 하나이고, 아그릴리온의 청구는 ICJ가 수리할 수 없는 것이라는 항변을 레스트로이아가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다른 하나이다. 아그릴리온은 레스트로이아의 이 제안을 수락했다. 그 결과 양국은 다음 4가지 사항에 대한 ICJ의 판결을 구하는 특별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1) 아그릴리온은 BeeToSurvive 호의 헬레논 해협 상공비행을 허용함으로써 레스트로이아에 대한 국제의무를 위반한 것인가? (2) 레스트로이아 법원에서 EcoPax 아그릴리온 지부와 EnorD 사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 중인데도 ICJ는 레스트로이아가 BeeToSurvive 호를 추락시킨 것이 아그릴리온에 대한 국제의무 위반인지에 대하여 재판할 수 있는가? (3) (상기 (2)에 대한 답이 긍정적인 경우), 레스트로이아는 BeeToSurvive 호를 추락시킴으로써 아그릴리온에 대한 국제의무를 위반한 것인가? (4) 레스트로이아가 BeeToSurvive 호 사건 분쟁을 ICJ의 재판으로 해결하는데 동의하지 않고 또 아그릴리온의 배상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부정기적으로 운항하는 레스트로이아 민간항공기에 대하여 아그릴리온이 자국 영공 비행을 금지하는 것이 국제법상 정당화될 수 있는가?

13. 아그릴리온은 1988년 유엔에 가입했고, 같은 해에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당사국이 되었다. 또 아그릴리온은 1997년부터 유엔해양법협약의 당사국이고, 1999년부터 국제민간항공협약(당시까지 채택된 모든 개정 의정서 포함)의 당사국이다.

14. 레스트로이아는 유엔 원 회원국이고, 1987년에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당사국이 되었다. 레스트로이아는 또 1998년부터 유엔해양법협약의 당사국이고, 국제민간항공협약의 원 당사국이지만, 이 협약을 개정하는 어떤 의정서에도 구속되겠다는 동의를 표시한 바 없다.

< Sketch Map >

